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4. 4. 1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4. 4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 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제4호)
 -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 →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 -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 →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 - 「축산물 가공처리법」 →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 -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→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
 - 보육시설 → 어린이집
 - 식재료관련 용어 정비
-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8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인용조문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제명 등 개정사항 반영 (안 제2조제4호)

-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 ➡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-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 ➡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축산물 가공처리법」 ➡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-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 ➡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보육시설 ➡ 어린이집
- 식재료관련 용어 정비

나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영유아보육법」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반영)
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4.3.20.~2014.4.2, 13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근거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.”를 “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「식품위생법」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·수·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·가공된 식품으로,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

제2조제4호나목 중 “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”을 “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친환경농산물”을 “친환경농수산물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축산법」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

제2조제4호라목 중 “우수 품질 인증품”을 “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의한 보육시설”을 “따른 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을 “(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급식심의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급식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인정하는 자”를 “인정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하며 1회에 한 하여”를 “하되 한 차례만”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, 출석위원 명,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.

제11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, 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·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식재료”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, <u>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「농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<u>품질인증 우수 농산물</u></p> <p>나.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에 따른 <u>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</u></p> <p>다. 「축산법」, 「축산물 가공처리법」, 「친환경농업 육성법」에 따른 <u>무항생제 등급 이상으로서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과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 <u>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, <u>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「식품위생법」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·수·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·가공된 식품으로,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가. 「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」에 따른 <u>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</u></p> <p>나. 「<u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<u>친환경농수산물</u></p> <p>다. 「<u>축산법</u>」, 「<u>축산물 위생관리법</u>」에 따른 <u>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고 「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「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」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</p> <p>라. 「식품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</p> <p>마. 「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(원양산을 포함한다)</p> <p>바. 사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.</p> <p>1.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의한 학교</p> <p>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의한 유치원</p> <p>3.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</p> <p>4. (생략)</p> <p>제6조(급식심의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급식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</p>	<p>법률」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</p> <p>라.----- 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</p> <p>〈삭제〉</p> <p>바.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따른 ---</p> <p>2. ----- 따른 -----</p> <p>3. ----- 따른 어린이집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급식심의위원회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<u>자</u>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 자</u></p> <p>③、④ (생략)</p> <p>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、⑦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----- ----- <u>사람을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③、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하되 한 차례만</u>----- -----. ----- -----</p> <p>⑥、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, 출석 위원명,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.</p> <p>제11조(준용)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-----.</p>